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및 개선방안*

노 현 섭**

〈 목 차 〉

- | | |
|-----------------------------|----------|
| I. 서론 | VI. 결론 |
| II. 벤처기업의 정의와 범위 | 참고문헌 |
| III.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방향 | Abstract |
| IV.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
| V.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I. 서 론

전반적인 고비용·저효율의 산업구조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방안의 하나로 산업구조조정을 선도할 벤처기업의 육성이 제시되고 있다.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지식집약적 벤처기업을 금융, 기술, 세무행정 등의 측면에서 지원하여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첨단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통하여 고비용·저효율에 기인한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은 수익성이 높고 설비, 노동 및 토지절약적인 특성이 있어 공장용지 등의 문제에 쉽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유망한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신규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나라는 고급인력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인력위주의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벤처산업은 미국을 1980년대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으로, 최근 미국의 경제활력과 산업경쟁력의 회복은 벤처기업의 육성에 근거하였

* 이 논문은 1999년도 교육부 우수자연계연구소(경남정보대학 산업기술연구센터) 지원사업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남정보대학 비즈니스정보계열 조교수

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창업지원시책을 기술집약적 지식정보화시대에 적합한 벤처기업(창업 중소기업 포함) 육성정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7년부터 중소기업지원시책에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1997년 3월 31일에 '중소기업 창업 및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대책'을 확정하고 이 계획에 따라 관계법령이 제정·개정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7년 8월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등 여러 가지 벤처기업 관련 창업과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보다 더 많은 특례조치를 두고 있다. 최근의 주요 벤처기업관련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997년 8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1998년 3월 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 신설
- 1999년 3월 금융감독원, 코스닥 등록요건 대폭 완화
- 1999년 3월 재경부,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 마련
- 1999년 5월 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내 벤처정책과 신설
- 1999년 6월 벤처기업 확인절차 및 벤처기업 범위 변경
- 1999년 6월 코스닥 기업 대주주, 등록 후 6개월간 주식 10% 이상 매각금지 규정
- 1999년 7월 벤처기업확인요령 중 매출액 기준 설정 및 평가기관 추가 지정, 문화관광분야 신기술사업범위 설정(신설)
- 1999년 8월 금융감독위원회, '벤처기업 유·무상증자 제한규정' 마련
- 1999년 12월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확인요건 및 확인절차 강화
- 1999년 12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벤처기업 지원시책 및 평가 및 반전방안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로는 벤처기업에 대한 성공요인을 창업자의 특성, 산업환경, 전략, 자원과 능력, 조직특성 등으로 분류하여 이론적으로 정리한 연구, 벤처기업의 성공전략과 성공요인에 대한 문헌연구를 정리한 연구, 성공벤처기업의 특성을 사례분석한 연구, 벤처기업의 특성과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또한 관련연구로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분석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창업지원체계를 창업동향, 벤처캐피탈 및 창업교육 분야를 비교한 연구, 벤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의 개선방안을 창업교육기관, 벤처캐피탈, 창업활동기구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 벤처조합을 통한 연구개발비 조달방안에 대한 연구,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주식시장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최덕규·노현섭·김명희, 1999).

이러한 벤처기업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벤처기업의 배태조직 및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벤처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등을 규명하거나 벤처캐피탈회사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들은 벤처기업의 기술, 인력, 자금조달 실태 등을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특성을 도출하고 국가차원에서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또한 본 연구와 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앞으로 우리 경제에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벤처기업을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조세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분석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향은 자금공급의 원활화, 기술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입지공급의 원활화로 나눌 수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을 통한 조세지원과 기타 법에 의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세법을 통한 조세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관련 세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벤처기업을 추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벤처기업이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중소기업, 새로 창업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벤처기업 해당 업종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지원조건을 벤처기업이 실질적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서론에 이어, II.에서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III.에서는 벤처기업의 현황,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살펴본다. IV.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V.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VI.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II. 벤처기업의 정의와 범위

벤처기업(venture company)은 신기술(특히 컴퓨터, 멀티미디어,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기술), 노하우 및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를 사업화 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 벤처기업은 성공의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투자위험성이 크나(high risk) 사업화에 성공하면 높은 이익(high return)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총칭한다. 벤처기업은 모험기업, 신기술개발기업, 하이테크기업, 기술집약기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벤처기업의 정의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1997년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에서는 “벤처기업은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2)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 연구개발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한 기업, 특허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및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벤처평가우수기업 등 네 가지 유형 중 한 가지에 속하여야 하며, (3) 벤처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고 벤처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2.1 중소기업의 범위

먼저,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 개관한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1)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2)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 자산총액 등이 일정한 규모 이하여야 하며,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¹⁾

세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시 종업원 수, 자산총액,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에 대한 기준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2.1.1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부록 1>에 요약되어 있음)의 업종(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기타 서비스업)²⁾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하나, 세법상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다.

- 1)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되며, 소기업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운송업은 50인, 건설업은 30인,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은 10인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기업에 대해서는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 2) 중소기업해당사업에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함),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한다. 예를 들어,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다.

2.1.2 중소기업의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근로자 수, 자산총액 등이 일정한 규모 이하여야 하며,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 이내일 것(〈부록 1〉에 요약되어 있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함) 수를 말하며,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둘째,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부록 1〉에 요약되어 있음)의 기준 이내일 것.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건설업, 운수업, 도매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자산총액기준이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총액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고 중소기업범위를 판정한다.

셋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당해 중소기업 이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소유하는株式이 발행株式 총액의 30% 이상이거나 임원의 임면 등으로 당해 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업이 아니어야 한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2.2 벤처기업의 유형과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벤처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벤처기업은 “중소기업 중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전환중이거나 창업중인 기업을 말한다. 다만,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범위를 요약하면 〈표 1〉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벤처기업의 범위

구 분	벤처기업 해당기준		
	일반 기준	보완기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벤처캐피탈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투자하거나 자본금의 10% 이상인 주식을 인수한 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		
특허 기술 개발 기업	특허권, 실용신안권 획득기업	직전 사업연도에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수출의 경우는 25%) 이상인 기업	매출실적에 미달하는 경우 벤처기업 평가기관에서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정받은 기업
	신기술 사업기업	개별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벤처평가 우수기업	창업중인 기업 등으로서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2.2.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으로서, 벤처캐피탈의 투자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20% 이상이거나 주식인수 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³⁾을 말한다. 여기서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다산벤처주식회사 등을 말하며, '투자'는 신주,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2.2.2 연구개발투자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은 연구개발투자가 많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보는 기준으로, 이 기준에 따른 벤처기업은 당해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당해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주식(신주에 한함)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2.2.3 신기술개발기업

2.2.3.1 특허기술개발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 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본다. 이 기준에 따른 벤처기업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등록출원중인 기술 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포함하나 실시권은 인정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직전연도 매출액의 비율이 총매출액의 50% 이상(또는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당해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2.3.2 신기술개발기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 하거나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⁴⁾을 영위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본다. 이 기준에 따른 벤처기업은 신기술사업에 의하여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율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신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생산한 제품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인 기업이다. 당해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2.3.3 벤처평가우수기업

창업중인 기업 등으로서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말한다.

창업중인 기업 등의 범위는 (1) 창업중인 기업이거나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 하는 기업, (2) 의장권(의장등록출원 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포함)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3) 신기술개발기업으로서 사업화의 정도가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이 포

4)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는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을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동법 제23조)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또는 자본재의 시제품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2)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3)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4)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5)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6) 우수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7)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8) 영상산업 중 영상물 창작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9)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10)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11) 중점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12)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13) 기타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자본부령이 정하는 사업.

함된다. 한편 벤처기업평가기관은 국립기술품질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말한다.

2.3 벤처기업 해당업종

위에서 설명한 벤처기업의 범위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여야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벤처기업 해당업종은 최덕규·노현섭·김명희, 1999, <부록 2> 참조).

현재 업종구분 없이 거의 모든 업종에 있어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나, (1) 숙박 및 음식점업, (2) 부동산업, (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기타 서비스업 등의 업종은 벤처기업의 대사에서 제외하고 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벤처기업확인요령).

2.4 벤처기업확인요령 및 절차

벤처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확인요령'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⁵⁾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확인요령 제3조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청장 등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벤처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록 2> 참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다.

Ⅲ.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방향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은 기술개발 및 특허권의 보유가 38.0%, 확실한 수요처 확보가 28.3%, 틈새시장의 진출이 18.1%, 안정적인 기술인력 확보가 12.0%로 나타났다. 반면 벤처기업의 경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으로 판로개척 어려움이 26.1%, 사업초창기이기 때문이

5) 1998년 5월 현재 국세청에서 발표한 지원대상 벤처기업은 총 1,101개회사이며, ① 중소기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총액이 당해 기업자본금의 20/100 이상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100 이상인 기업이 538개, ② 연구개발비가 연간 총매출액의 5/100 이상인 기업 425개, ③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 특허등록출원·실용신안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사업화 하는 기업이 105개, ④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 하거나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 등으로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결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33개 기업이다(국세청, 1998).

23.5%, 신제품 및 기술개발 미흡이 21.7%,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11.3%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때 겪는 애로요인으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기간별로는 창업준비기의 경우 자금조달 다음으로 행정절차를 들고 있으며, 다른 기간에서는 인력확보가 자금조달 다음으로 큰 애로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벤처기업들이 창업과정에서 항상 자금조달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력확보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양현봉·주현·조영삼, 1998).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으나 크게 자금공급의 원활화,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입지공급의 원활화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화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며, 벤처캐피탈을 활성화하며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새로운 주식시장을 개설한다.

둘째,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정부부처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우수기술 보유자의 벤처기업 참여를 확대하며, 기술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벤처기업의 입지공급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벤처빌딩 및 벤처단지 등을 도입하고 벤처빌딩 및 벤처단지에 대한 입지관련 부담을 경감하며, 수도권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고 기술연구집단지단을 조성한다. 기술연구집단지단지(techno-park)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교육, 훈련시설, 연구소, 시험·생산시설이 집적된 산·학·연 공동연구단지이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비중(개별 벤처기업의 조달처별 비중의 단순평균임)은 자기자본(벤처캐피탈회사의 투자 제외)이 45.8%, 금융기관의 차입금(벤처캐피탈회사의 투자 제외)이 31.7%, 벤처캐피탈회사의 투자 및 용자가 12.9%, 기타 6.9%인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실태(양현봉·주현·조영삼, 1998)를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탈 회사를 활용(투자 및 용자)한 적이 있는 회사가 70.4%이나 50인 이상 벤처기업의 경우가 70% 이상으로, 소규모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은 물론, 엔젤캐피탈의 활용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접금융시장의 활용은 양현봉·주현·조영삼(1998)의 경우 상장기업이 6.4%, KOSDAQ 등록법인이 19.2%로 나타났으며, 100명 이상의 벤처기업의 경우 절반이 상장 또는 등록법인이나 종업원 100명 미만 규모의 기업은 직접금융시장의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의 지원방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 벤처기업의 창업에 있어 주요 원천은 대학과 공공연구소이나, 이들 연구기관이 수행한 기술개발 결과가 상업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창업이 기반이 되는 기술능력의

외부조달(out-sourcing)이 원활해지는 연결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정보를 지역내 중소기업에 보급해주는 기술이전센터 등의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벤처기업은 창업초기단계를 지나 어느 정도 성장단계에 들어서면 자금조달보다는 인력 확보가 더 큰 애로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벤처기업의 초기사업의 불안정, 근무지의 불리한 위치,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고급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연구소 및 대학의 풍부한 연구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교수와 연구원의 벤처기업에 대한 겸직허용과 대학을 벤처기지로 육성(실험실 공장을 허용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장설립 허용 등)은 타당한 지원방안으로 판단된다.

벤처기업들의 입지문제와 관련된 실태조사에서 업종별로 선호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과 벤처단지 조성을 선호한 반면, 비제조업에서는 저렴한 사무실의 공급과 벤처빌딩의 건설을 선호하였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컴퓨터 관련 업종에서 벤처단지의 조성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는 집적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비제조업의 경우 저렴한 사무실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벤처기업의 공간절약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양현봉·주현·조영삼, 1998). 기존의 창업관련 지원제도는 제조업 중심의 공장용지에 대한 지원이 주종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나, 벤처기업의 경우 업종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입지형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입지관련 지원방식이(조사결과)에 부합하는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덧붙여, 벤처기업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행정처리절차를 개선하고, 벤처기업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지원기관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연구한 이재규(1998)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수립, 법안제출, 정보제공 및 자본조달 등을 위해 설립된 미국 중소기업청(SBA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과 미국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로비단체인 자영업자 전국연합(NFIB :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을 분석하고, SBA는 정부기관이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한 예로, NFIB는 순수민간단체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막고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활동을 하는 예로 들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별도로 순수 민간단체로 설립된 '소기업연합'이나 '벤처기업협회' 등을 NFIB와 같이 연합·협회에 가입한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기능수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IV.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을 통한 조세지원과 기타 법에 의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세법을 통한 조세지원은 직접적인 세제지원인 반면 기타 법에 의한 지원은 포괄적인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세법 이외의 법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법을 통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⁶⁾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벤처기업을 추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였다.⁷⁾ 즉,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표 2>와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한다.

- 6) 기타 법률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공장설립시의 조세특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전용부담금(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농지전용부담금 중 50% 감면, 농업·농어촌기본법 제41조) 및 산림전용부담금(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산림전용부담금 중 50% 감면, 산림법 제20조의 3) 등을 면제한다.
또한 벤처기업 이외의 벤처관련 조세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 (1) 창업보육센터 운영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에 대한 조세특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감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이다.
 -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조세특례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비과세(조특법 제14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조특법 제13조 제2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제11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손금산입(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투융자액의 50%를 손금으로 인정, 조특법 제17조), 대도시 지역 내에 중소기업투자회사 설립시 등록세 3배 증과 배제(지방세법 제138조) 등이 있다.
 -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조세특례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제14조),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제117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조특법 제14조 제1항),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조특법 제14조 제4항),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조특법 제14조 제5항) 등이 있다.
 - (4) 개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로, 투자자금에 대한 종합소득 공제(조특법 제16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조특법 제14조),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불산입(조특법 제14조 제3항),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 불산입(조특법 제14조 제4항), 소득세 원천징수의 특례(조특법 제14조 제5항) 등이 있다.
 - (5) 기관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로,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조특법 제14조 제2항).
-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부록 3>을 참조.
- 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이외에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크게 법인세법의 세제지원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법인세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적대비의 손금한도(법인세법 제18조의 2), 기밀비의 손금한도(법인세법 제44조의 2), 결손금 소급공제(법인세법 제38조의 2), 법인세 분납기간의 연장(법인세법 제31조 제2항), 외상 매출금 대손처리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의 법인세감면(조특법 제6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법인세감면(조특법 제34조), 수출산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조특법 제27조, 1994. 12. 22. 삭제, 종전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한함),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조특법 제31조),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으로 인해 양도하는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또는 이월과세(조특법 제33조), 5년 이상 영위한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조특법 제35조) 등이 있다.

〈표 2〉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관련조세	관련규정	감 면 내 용
법인세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함 · 창업 벤처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함
등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100% 감면)함
취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100% 감면)함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함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액(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않음
인지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9호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

주 : 1. 등록세는 1999년 8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에는 75%를 감면하였다.

2. 취득세는 1999년 8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에는 75%를 감면하였고, 1998년 12월 28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에는 50%를 감면하였다.

4.1 벤처창업의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는 창업중소기업(벤처창업중소기업 포함)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후 5년간(총 6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등의 조세지원 혜택을 준다. 여기서 창업중소기업은 ① 수도권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창업벤처중소기업, ③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조특법 제6조 제1항),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조특법 제6조 제3항).

4.1.1 조세지원의 요건

벤처기업이 창업시 조세지원을 받으려면 (1)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요건을 갖추거나 (2) 벤처중소기업의 조세지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창업중소기업의 조세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조세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이 조건은 ①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② 벤처기업은 새로 창업하는 기업이어야 하며,⁸⁾ ③ 벤처기업 해당업종에 해당해야 한다.⁹⁾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야 한다. 수도권외(조특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은 위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하면 창업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세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세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2) 대통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기업에 해당되어야 창업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범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벤처기업의 범위와 같다. 단, 연구개발투자기업의 경우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수입금액의 5% 이상 계속 유지되어야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8) 따라서 기존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업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도 포함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다음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 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②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여기서, 동종의 사업이란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말한다.

9) 벤처기업은 제조업 및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방송국 및 프로그램 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함),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및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업종에 해당되면서 조특법(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에 해당되어야 한다.

4.1.2 조세지원내용

위에서 살펴본 조세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으로, 창업중소기업(벤처창업중소기업 포함)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후 5년간(총 6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의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으며(조특법 제127조),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2 이상의 법인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다(조특법 제127조). 또한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구분경리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규정 등 조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¹⁰⁾

둘째, 지방세의 감면으로, 지방세의 감면은 등록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과 지방세 부과제도의 배제가 있다.

(1) 등록세의 감면(조특법 제119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¹¹⁾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100% 감면)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취득세의 감면(조특법 제120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100%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재산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

10) 벤처기업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에 세액감면 등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營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또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는 법인은 당해 연도의 이익을 처분할 때에 그 공제받은 세액에서 그에 관련된 농어촌특별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45조 제1항). 거주자의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45조 제5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 전입하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세액감면 등을 받은 기업이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 규정에 따라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관련된 투자자산 등을 규정된 기간 이전에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등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46조).

11) 창업일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등 기일을 말한다.

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한다.

(4) 지방세 중과제도의 적용배제, 수도권 지역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지방세법 제112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설립등기 등의 등록세 중과규정(지방세법 제138조) 및 대도시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5년간 재산세 중과규정(지방세법 제188조)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280조 제9항).

셋째, 관련 세법의 조세지원으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있는데, 직접지원은 소득의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세액에 직접영향을 주는 것이고, 간접지원은 손금산입한 금액의 환입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창업의 초기단계로서 관리능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직접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¹²⁾

직접지원에는 비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과세특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세지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구분경리규정,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규정 등 조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비과세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제13조), 증권거래세의 비과세(조특법 제117조) 등이 있다.

세액공제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등이 있다.

소득공제로 자본재산업의 공장 또는 연구개발부서에서 근무하는 기술자격소지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인 자본재산업의 현장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9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등이 있다.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5조)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당해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적자원을 조달하는 것으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4조) 등도 있다.

12) 조세지원은 개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 조감면규제법은 각종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조세감면에 관한 효율성, 적정성과 과세의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제2장 제1절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이고 제2절은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로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라고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다.

4.2 세정지원

국세청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 세정상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애로 없이 회사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정지원방안은 세무조사의 면제(지원대상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후 2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자금난 등 경영애로 벤처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등의 지원,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벤처기업 전담 상담창구의 개설, 지원대상 벤처기업의 파악·관리, 지원요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세정지원 이행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감독의 강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원대상 벤처기업을 파악하고 상담 등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창업 후 일정기간 세무조사면제 등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벤처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자금의 출처조사를 면제하고, 납기연장, 납세담보 완화, 환급금 조기처리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 세금에 대한 애로 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3〉 세목별 지원

세 목	내 용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 각종 부가가치세 관련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함. - 단, 상습적인 무자료거래자, 세금계산서 부실거래자, 자료상 등 조세범법자와의 거래자, 부당환급혐의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과세자료처리 등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지 확인 처리하되 해당 과세자료에 국한하여 처리함.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선정된 실지조사 미결법인에 대하여는 조사면제함. · 새로이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지원대상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서면분석 대상선정 제외함.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지조사,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기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각종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창업자금 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등도 제외함.

V.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를 중심으로 한 창업과 육성정책은 그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미 여러 차례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다.¹³⁾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를 중심으로 한 창업과 육성정책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과 육성정책 중 조세 이외의 방안은 III.에서 이미 논의하였다.

첫째, 벤처기업의 정의(및 범위)에 대한 문제점으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특허기술 개발기업과 신기술개발기업, 벤처평가 우수기업이라는 벤처기업에 대한 5가지 정의 중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벤처평가우수기업을 제외한 3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출액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창업연도에는 직전 사업연도가 없으므로 비율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투자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중에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 동안의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완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중에 창업하였으나 창업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는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특허기술개발기업과 신기술개발기업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연구개발투자기업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개정(1998년 7월)으로, 특허기술개발기업, 신기술개발기업과 연구개발투자기업은 당해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경우에는 직전 2분기 이상의 기간의 매출액, 수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시기와 관계없이 2분기(6개월)가 경과한 후에는 매출실적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특허기술개발기업과 신기술개발기업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화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기업의 경우에도 또한 특허기술개발기업과 신기술개발기업의 경우와 같은 방향으로 지원책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3)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었으나, 1999년 8월 31일 등 관련 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되었다. 조세지원을 받기 위한 벤처기업의 범위에 대한 규정에서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빌딩)에 입주하여 창업하여야 한다. 즉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벤처단지외 벤처빌딩 이외에 창업하는 기업은 조세감면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은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함께 입주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업종에 따라 자기에게 적합한 입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적절한 입지에 벤처단지 또는 벤처빌딩이 없다면, 이 경우에 벤처기업은 조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적절한 위치에 벤처단지 등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자기에게 적합한 입지를 포기하고 이미 조성된 다른 벤처단지에 입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해 벤처단지 등으로 입주할 것을 권장하여야 하나, 벤처단지 등에 미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감면을 배제하기보다는 감면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조세지원을 받기 위한 벤처기업의 범위에 대한 규정에서 벤처기업은 새로 창업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창업 당시 조세특례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다가 조세특례 적용업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도 포함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기업이 벤처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에 포함시키거나, 기존의 기업 중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새로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정기간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세지원을 받기 위한 벤처기업의 범위에 대한 규정에서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해당업종에 해당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를 때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전업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나 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니므로 감면이 배제된다. 이것은 벤처기업의 감면조항을 기존의 창업중소기업에 감면조항에 추가한 결과이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업종은 벤처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종으로 이미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관련 법에서 다시 업종을 제한하여 조세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벤처기업 해당업종이면 모든 업종에 대하여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으로, 벤처기업이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중소기업, 새로 창업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벤처기업 해당업종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지원조건을 벤처기업이 실질적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VI. 결 론

현재 우리 나라는 과거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에서 첨단지식 또는 기술집약산업의 육성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정부는 세정, 금융, 기술, 입지 등이 원활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세법을 개정하였다.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으로서 벤처캐피탈투자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 특히기술개발기업, 신기

술개발기업과 벤처평가우수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향은 자금공급의 원활화, 기술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입지공급의 원활화로 나눌 수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을 통한 조세지원과 기타 법에 의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법을 통한 조세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관련 세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벤처기업을 추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벤처기업이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중소기업, 새로 창업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벤처기업 해당 업종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지원 조건을 벤처기업이 실질적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 나라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은 초보단계라고 할 수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관련업무도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벤처기업에 대하여 세제상 허용범위내에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애로 없이 기술개발과 신상품개발 등 회사 경영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벤처기업 관련 행정절차와 각종 규제완화도 동시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세청(1998),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종합 대책, 국세청.
2. 김선홍(1997), "국내 벤처기업의 현황과 전망," 기업경제 제46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pp.14~22.
3. 김재진(1997. 7.), "주요국의 벤처캐피탈 현황과 지원제도,"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pp.24~46.
4. 김홍범(1998), "한국 벤처기업의 성공전략과 성공요건에 관한 문헌연구," 벤처경영연구, 제2호, pp.129~153.
5. 박경렬(1998), "일본 벤처기업의 생성배경과 경영과제," 경영사학, 제16호 pp.329~344.
6. 박춘엽(1997), "한국과 미국의 창업지원체계의 비교 : 벤치마킹식 접근," 중소기업연구, 제19권 제1호, pp.251~277.
7. 양현봉·주현·조영삼(1997), 벤처기업의 실태 및 육성전략, KIET공청회자료, 산업연구원.
8. 양현봉·주현·조영삼(1998), "한국 벤처기업의 특성분석 및 육성방안," 벤처경영연구, 제1호, pp.129~153.
9. 오규택·이관영(1998), "벤처조합을 통한 연구개발비 조달방안," 벤처경영연구, 제1권 제1호, pp.155~181.
10. 이기환(1998),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주식시장의 역할," 벤처경영연구, 제1권 제1호, pp.183~211.
11. 이장우(1998), "성공벤처기업의 특성: 사례연구," 벤처경영연구, 제1권 제2호, pp.101~128.
12. 이장우·장수덕(1998),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벤처경영연구, 제1권 제2호, pp.69~95.
13. 이재규(1998),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연구: SBA와 NFIB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20권 제1호, pp.195~216.
14. 조형래(1988), "벤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의 개선방안," 벤처경영연구, 제1권 제2호, pp.129~153.
15. 중소기업청(1999), 벤처기업 확인요령.
16. 중소기업청(1999), 벤처기업 확인업무지침.
17. 최덕규·노현섭·김영희(1999),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방향과 조세지원," 경영논총, 제20집, 동아대학교 경영문제연구소.
18. 함영복(1999), 최신법인세의 이론과 실무, 세학사.

〈부록 1〉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와 자산총액 기준(단위: 명, 억원)

표준산업분류	해당 업종	상시 근로자 수	자산총액
10	석탄 광업	300(무연탄 채굴업 700)	200
10102	연탄 및 기타 응집 무연탄 생산업		500
12	우라늄 및 토륨광업		200
13	금속광업		200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		200
15	음식료품 제조업	500	500
16	담배제조업		300
17	섬유제품 제조업	400, 500, 600	500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500	500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500, 700	400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500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00	700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00	700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600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400, 500, 600	700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500	600
2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00, 700	500
27	제1차 금속산업	500, 600	700
28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400, 500, 600	700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00, 500, 600	800
30	사무, 계산, 회계용 기계 제조업	400	700
30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600	800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400, 500, 600, 700	800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00, 700, 1000	700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00	700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00, 1000	800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00, 600	700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400, 500	400
37	재생자료 가공처리업		500
40-4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0	
45	건설업	200	
50-93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20	

- 주 : 1. 산업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91-1호(1991. 9.)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임.
 2. 기업의 업종분류는 표준산업분류 중 ① 세세분류(5 단위), ② 세분류(4 단위), ③ 소분류(3 단위), ④ 중분류(2 단위)의 순서로 적용함.
 3. 위의 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를 분류·요약한 것이며, 빈칸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의미임. 또한 '상시 근로자 수'란의 여러 숫자는 세부 산업분류별 상시 근로자 수를 분류한 것임.

〈부록 2〉 벤처기업의 범위 및 증빙서류

구 분	벤처기업 해당 기준		증빙서류
	일반 기준	보완기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인 기업(신주,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 사채 포함) - 다만, 투자총액이 주식(신주에 한함)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10% 이상인 기업		① 벤처캐피탈협회,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이 증명하는 서류 ② 법인등기부등본 등(주1) ③ 투자계약서 사본
연구개발 투자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대비한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 - 다만,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로 산정		①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가 확인·증명한 서류 ② 법인등기부등본 등
특허기술 개발기업	직전 사업연도에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수출의 경우는 25%) 이상인 기업 - 다만,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산정	매출실적에 미달하는 경우 벤처기업 평가기관에서 사업화능력이 우수하다고 판정 받은 기업	① 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 또는 출원중인 기술로 특허청장이 인정한 서류 ② 법인 등기부등본등 ③ 변리사가 확인·증명한 서류에 근거(주 2)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기술지도사가 확인·증명한 서류

구 분	벤처기업 해당 기준		증빙서류
	일반 기준	보완기준	
신기술사업화 기업	<p>다음의 신기술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수출의 경우는 25%) 이상인 기업</p> <p>- 다만,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산정</p> <p>1)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산업지원부)</p> <p>2) 전기통신 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 기술개발사업, 우수신기술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정보통신부)</p> <p>3) 영상물창작 신기술사업(문화관광부)</p> <p>4) 신기술 이용사업, 특정연구 개발사업, 중점연구 개발사업(과학기술부)</p> <p>5)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환경부) 등</p>	특허기술개발기업과 같음	<p>① 개별 신기술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 의장이 증명한 서류</p> <p>② 법인 등기부등본 등</p> <p>③ 변리사가 확인·증명한 서류에 근거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기술지도사가 확인·증명한 서류</p>
벤처평가 우수기업	<p>창업중인 기업 등으로서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p> <p>- 창업중인 기업 등의 범위:</p> <p>(1) 창업중인 기업</p> <p>(2)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p> <p>(3) 의장권(의장등록출원 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포함)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및 신기술개발기업으로서 사업화의 정도가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p> <p>- 벤처기업평가기관: 국립기술품질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p>		<p>(1) ① 벤처기업평가서, ② 평가기관에 제출한 서류</p> <p>(2) ① 벤처기업평가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등</p> <p>(3) ①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원부(신청일기준 30일 이내의 것) 또는 심사 청구 및 출원중인 기술은 특허청장이 인정한 서류 또는 개별 사업별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증명한 서류 ② 법인등기부등본 등 ③ 벤처기업평가서</p>

주: 1.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증빙서류에 제시되어 있는 증빙서류 이외에 사업자등록증(신청일기준 30일 이내

의 것),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표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기술 선정비용 미달기업으로서 보완기준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특허등록원부와 벤처기업 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허·신기술제품의 매출액 산정시, 특허 또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부록 3〉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벤처기업	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 투자액의 일부(3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함.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	개인투자자	- 투자액의 일부(3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벤처캐피탈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함. - 배당소득에 법인세를 비과세함. - 투융자 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50%)함. - 등록세에 대한 특례(3배 증가 배제) -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개인투자자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함. -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불산입함.
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함. -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개인투자자	- 투자액의 일부(3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함. -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
	기관투자자	- 투자액의 일부(3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함. - 법인세 원천징수 특례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ax Support System for Venture Company

Roh, Hyun-sub

This study reviews an overview of the current tax support system for venture company and provides the directions for developing tax support system related policy for the venture company in Korea.

The tax authority provides a supporting directions of venture company in three ways: a financing viewpoint, a technical and manpower viewpoint, and the location viewpoint. And the supporting system for venture company is divide into tax support system through tax laws and support system through other law.

The requirements of receiving tax support for venture company are a venture company, a small and medium company, a newly starting firm, and so forth. To mitigate the restriction imposed by the current tax law on venture company encourage venture activities in Korea.